

특 허 법 원

제 2 5 부

판 결

사 건 2025나10208 손해배상(지)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하스, 담당변호사 윤이나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1. 주식회사 다우텍

대표이사 B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빗, 담당변호사 신용섭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4가단101589 판결

변 론 종 결 2026. 9. 10.

판 결 선 고 2026. 10.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18.부터 2026. 10. 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및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중 3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 39,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¹⁾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1)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이와 같이 항소취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선택한다

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황정P&M'이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아래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의 디자인권자이다.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5. 9. 16./ 2006. 4. 6./ 제411334호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문짝 고정용 마그넷 홀더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다우텍(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공업용 기계부품 제작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회사는 2007. 10. 11. 문짝용 잠금쇠에 관하여 [별지 2]와 같이 디자인등록을 출원하여 2008. 6. 26. 제496880호로 등록(이하 '피고 등록디자인'이라 한다)하였고, 그 유사디자인으로 [별지 3]과 같은 디자인이 제496880유사1호(이하 '피고 유사디자인 1'이라 한다), 제496880유사2호(이하 '피고 유사디자인 2'라 한다)로 각 등록되었다.

다. 관련 디자인권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HFA'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김OO를 상대로 '[별지 4]와 같은 확인대상디자인(이하 'HFA 디자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

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0당 1852호로 심리하여 2010. 12. 28. 'HFA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2) 원고는 2012. 2. 17. 피고들에게 '피고 회사가 피고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임을 확인하였고, 그 실시제품의 실물도 확인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데, HFA 디자인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에서 모두 승소하였다, HFA 디자인은 피고 유사디자인 2와 일치하는 제품이고, 원고 측 변리사는 원고가 HFA 디자인에 관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였기에 유리할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피고 회사의 입장이 어떤지 들어보고 싶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3) 원고는 2013. 1. 18. 특허심판원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 등록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3당138호로 심리하여 2014. 1. 23. '피고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등록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므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등록디자인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는 2014. 2. 28.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 유사디자인 1, 2 역시 이 사건 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었다.

라. 피고 회사의 제품 판매 및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 회사는 2019. 10. 31. 및 2020. 4. 20. 영진종합상사에 'DW 3030' 제품 60

개를 총 240,000원에 판매하였다.

2) 원고는 2020. 10. 20.경, 피고 회사의 위 판매 행위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B를 디자인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 피고들은 2022. 7. 4. 디자인보호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23. 10.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정276호로 각 벌금 7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0, 19,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회사는 2008. 6. 26.부터 2020. 10. 20.까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DW 3030', 'DW 3060', 'DW 4040', 'DW 4080' 제품(갑 제24호증 2면, 이하 이를 통틀어 '피고 제품들'이라 한다)을 판매하여²⁾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에 관한 연대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인된 'DW 3030' 제품만을 판매하였을 뿐, 나머지 제품들은 판매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회사의 'DW 3030' 판매는 재고 소진의 차원에서

2) 원고는 제1심법원에서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에 나타난 제품을 침해 제품으로 특정하였다가, 2026. 9. 10. 자 제5회 변론기일에서 갑 제24호증 2면에 나타난 제품들을 침해 제품으로 특정하였다.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의 함정구매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만일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영진종합상사로부터 'DW 3030' 제품을 수령한 2019. 10. 31.이나 2020. 4. 22., 또는 늦어도 원고가 피고 B를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2020. 10. 20.에는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4. 1. 11.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침해기간 중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4. 1. 11.부터 역산하여 10년을 경과한 기간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장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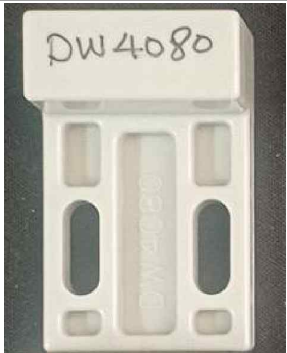
3.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제품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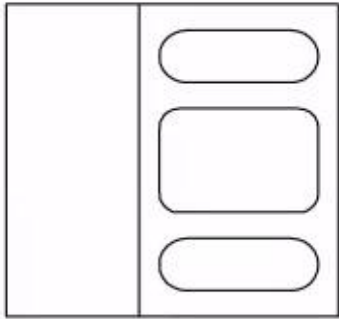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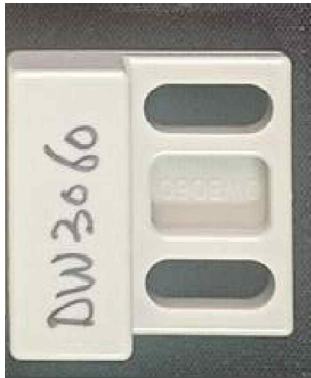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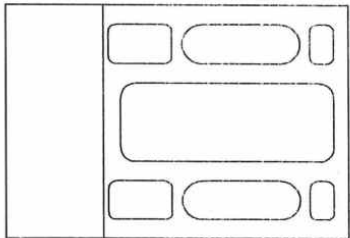
가) 대비 대상의 특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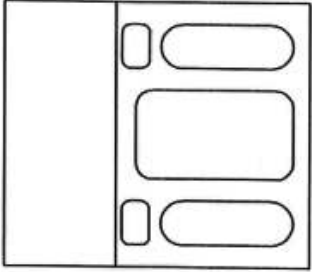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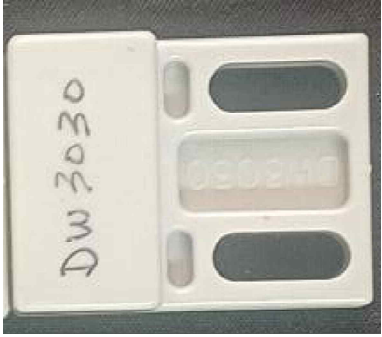
(1) 원고는 갑 제24호증 2면에 나타난 사진이 피고 제품들의 실물 사진이고, 이들은 피고 등록디자인과 피고 유사디자인 1,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한다.³⁾

DW 3060	DW 4040	DW 3030	DW 4080
			

3) 원고의 2026. 9. 7. 자 준비서면 2면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등록디자인, 피고 유사디자인 1, 2와 대응시킨 제품을 대비하면, 피고 제품들은 피고 등록디자인 및 피고 유사디자인 1,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에 대응하는 피고 등록디자인의 도면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들의 동일·유사 여부를 본다.⁴⁾⁵⁾

피고 등록디자인(평면도)	DW 3060
	
피고 유사디자인 1(평면도)	DW 4040
	
	DW 4080
	

피고 유사디자인 2(평면도)	DW 3030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갑 제24호증 2면에 나타난 피고 제품들이 피고 회사의 제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들의 2026. 9. 9. 자 준비서면 3면 참조).

그러나 갑 제24호증의 2에 나타난 제품들은 고정부 중앙의 사각형 홈에



'과 같이 제품 번호가 금형에 의해 인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의 2026. 6. 15. 자 준비서면 2면에는 '피고 회사의 문짝용 잠금쇠(DW-3030, MAGNET 3030)'과 같이 기재된 점, 피고 회사는 2011. 11. 14. (주)황정P&M에 'DOOR용 MAGNET+PLATE(2) SET'에 대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그 품명에는 'PROFILE 3030용', 'PROFILE 3060용', 'PROFILE 4040용', 'PROFILE 4080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은 'PROFILE 3030'이 'MAGNET 3030'과 같은 제품이며, 그 외 제품들은 적용되는 프로파일의 종류에 따라 분류된 것일 뿐 같은 유형

4) 피고 제품들의 사진을 오른쪽으로 90° 회전시켰다.

5) 'DW 4080'의 경우 피고 유사디자인 1보다 타원형 관통공()의 좌측에 형성된 사각형 홈(, )의 길이가 조금 더 길고, 'DW 3030'은 피고 유사디자인 2보다 타원형 관통공 좌측에

형성된 홈의 구체적 형상(, )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극히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이러한 이유만으로 'DW 4080', 'DW 3030' 제품이 피고 유사디자인 1, 2와 동일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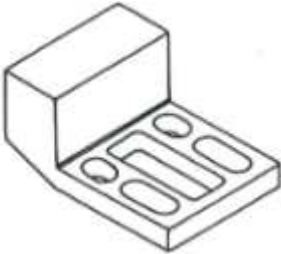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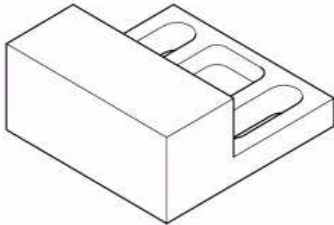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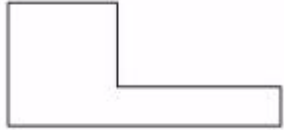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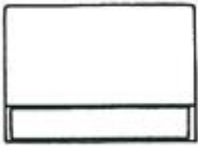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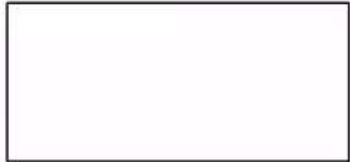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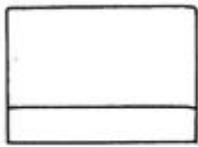
의 제품이라고 진술한 점(피고들의 2026. 8. 26. 자 준비서면 참조)을 고려하면, 갑 제 24호증 2면에 나타난 제품들은 피고 회사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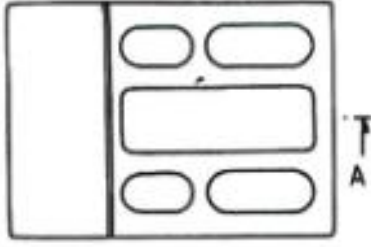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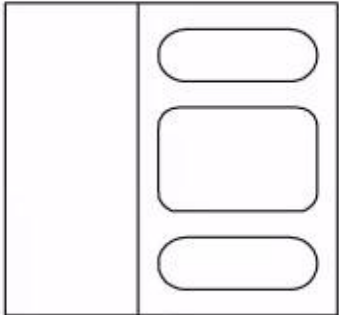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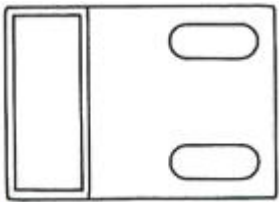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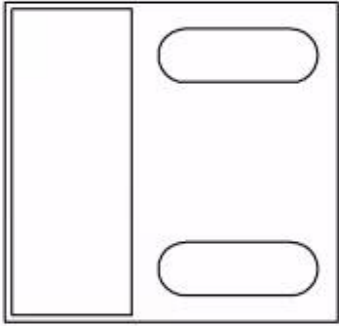
나) 대상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문짝 고정용 마그넷 홀더이고, 피고 제품들은 문짝용 잠금쇠인데, 이는 모두 자석이 포함되어 문짝을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고,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들도 다투지 않는다.

다)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

(1) 디자인의 대비

도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	DW 3060
사시도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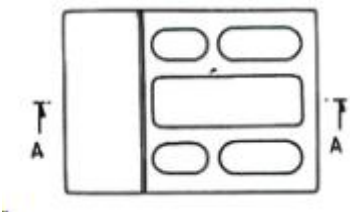
(2) 공통점 및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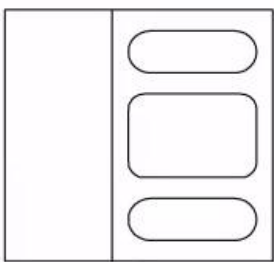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DW 3060' 제품은 ① 자석삽입부와 고정부가 수직을 이루는 'ㄴ' 자 형태인 점, ② 자석삽입부가 두꺼운 사각기둥 형상이고, 고정부는 자석삽입부 두께의 1/3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판으로 형성된 점, ③ 고정부와 연결된 저면에 장치된 자석면이 드러나도록 형성된 점, ④ 고정부의 모양에 있어서 가운데 직사각형의 홈이 형성되고 그 상하로 타원의 관통공이 형성된 점에서 공통된다.

한편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자석삽입부와 고정부가 만나는 부분이



과 같이 경사면을 이루고 있지만, 'DW 3060' 제품은 직각인 점, ㉡ 이 사건 등

록디자인은 고정부에 '  '와 같이 크고 작은 4개의 타원이 형성

된 반면 'DW 3060' 제품은 '  '와 같이 2개의 타원만 형성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DW 3060' 제품의 공통점 ① 내지 ④는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 자석삽입부와 고정부의 두께, 저면에 부착된 자석, 고정부에 형성된 직사각형 및 타원의 관통공에 관한 것으로서, 일반 수요자의 시선이 집중되고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반면 차이점 ㉠은 마그넷 홀더가 문짝에 고정되어 사용되면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차이점 ㉡은 문짝을 고정하기 위해 결합되는 나사나 볼트에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서 그 형태를 달리하는 것은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그렇다면 양 디자인 및 제품을 접하게 되는 수요자들은 앞서 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양 디자인 및 제품을 통하여 유사한 심미감을 느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DW 3060' 제품은 서로 유사하다.

또한 피고 유사디자인 1, 2에 따른 'DW 4040', 'DW 4080', 'DW 3030' 제품

도 'DW 3060' 제품의 전체적인 형상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자석삽입부와 고정부가 만나는 부분이 수직인지, 고정부 중앙의 직사각형의 홈을 기준으로 그 상하에 형성된 사각형 홈의 형상이나 개수 또는 타원형 관통공의 개수에서만 차이를 두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DW 4040', 'DW 4080', 'DW 3030' 제품 역시 서로 유사하다.

라) 검토결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들은 대상물품과 디자인이 모두 동일·유사하므로, 피고 제품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 회사의 피고 제품들의 생산·판매 여부 및 기간

앞서 든 증거,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11. 11. 14.부터 2020. 4. 20.까지 지속적으로 'DW 3030' 제품을 포함한 피고 제품들을 생산·판매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보았듯 이 사건 견적서의 품명에는 'PROFILE 3030용', 'PROFILE 3060용', 'PROFILE 4040용', 'PROFILE 4080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4호증의 1). 또한 피고 회사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매출내역(이하 '이 사건 매출내역'이라 한다)에는 2016. 6. 30. (주)케이에스티에게 'PROFILE 3060 절단'을 33,000원에 판매한 내역이 확인되고(갑 제17호증의 1 303면), 그 외에도 'PROFILE 절단', 'PROFILE 외' 등과 같이 'PROFILE'이 기재된 내용이 다수 발견된다(갑 제17호증의 1 301면 내지 332면).

② 피고들은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된 'PROFILE 3030용'이 'DW 3030'과 같은 제품이고, 'PROFILE 3060용', 'PROFILE 4040용', 'PROFILE 4080용'이 'DW 3030'과 같

은 유형의 제품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⁶⁾ 앞서 본 이 사건 견적서 및 이 사건 매출내역에 기재된 판매 내역 등은 피고 제품들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피고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 제품들을 2008. 6. 26.경 2,000개 ~ 3,000개, 2010.경 1,000개 정도 생산하였고, 2021. 10.경 재고로 200 ~ 300개 정도 남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17호증의 1 55면, 56면, 253면). 여기에 'DW 3030' 제품을 재고 소진 차원에서 판매하였을 뿐이라는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재고 소진을 위하여 피고 제품들을 계속적으로 판매해왔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앞서 본 이 사건 매출내역의 기재를 통하여도 확인된다.

④ 피고 제품들의 구체적인 판매 시점은 특정하기 어려우나, 피고 제품들이 생산된 시기를 고려하면, 피고 회사는 늦어도 이 사건 견적서가 작성된 2011. 11. 14. 무렵에는 피고 제품들을 판매하기 시작하여 영진종합상사에 'DW 3030'을 판매한 2020. 4. 20.까지는 피고 제품들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20. 4. 20. 이후에도 피고 제품들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알 수 있을만한 자료가 없다.

3) 피고 회사의 고의·과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및 그 대표자인 피고 B는 피고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 등록 공고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2014. 2. 28. 무효로 된 사실, HFA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HFA 디자인과 'DW 3030' 제품은 ① 자석삽입부와 고정부가 수직을 이루는 'ㄴ'자 형태인 점, ② 자석삽입부가 두꺼운 사각기둥 형상이고, 고정부는 자

6) 피고들의 2026. 8. 26. 자 준비서면 참조.

석삽입부 두께의 1/3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관으로 형성된 점, ③ 고정부 가운데에 직사각형의 홈이 있고, 그 상하에 대칭으로 2개의 타원형 관통공이 형성된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머지 제품 역시 HFA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심미감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차이점⁷⁾만 있을 뿐이므로 HFA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제품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손해발생 여부

피고들은 '피고 회사는 2019. 10. 31., 2020. 4. 20. 영진종합상사에 판매한 'DW 3030'은 재고 소진 차원에서 판매한 것이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 침해 증거를 수집하려는 차원에서 영진종합상사로 하여금 피고 회사에게 판매를 유도한 일종의 함정구매이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⁸⁾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와 피고 회사는 동종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데다가, 원고는 피고 제품들과 동종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갑 제17호증의 1 98면 내지 103면), 피고 제품들의 생산·판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임은 분명한 점, ② 앞서 보았듯 피고 회사는 2011. 11. 14.부터 2020. 4. 20.까지 계속·반복적으로 'DW 3030' 제품을 포함한 피고 제품들을 생산·판매하여 온 점, ③ 원

7)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자석삽입부와 고정부가 만나는 부분이 직각인지 또는 경사졌는지 여부, 고정부에 형성된 타원형의 관통공 좌우에 추가적으로 사각형 모양의 홈의 형성 여부 및 그 개수에 관한 것이다.

8) 피고들의 2025. 11. 17. 자 답변서 참조.

고가 'DW 3030' 제품의 판매를 유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피고 제품들 생산·판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검토결과와 정리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고의로 2011. 11. 14.부터 2020. 4. 20.까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피고 제품들을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단기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3463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특허심판원은 2010. 12. 28. 'HFA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실, 원고가 2012. 2. 17. 피고

들에게 'HFA 디자인이 피고 유사디자인 2와 일치하는 제품'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DW 3030' 제품은 피고 유사디자인 2의 실시품인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를 디자인권 침해 혐의로 고소한 2020. 10. 20.경에는 'DW 3030' 제품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①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고소 당시 피고 회사의 'DW 3030' 제품 판매 규모나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앞서 보았듯 피고 회사는 피고 제품들 중 'DW 3030' 제품 외 나머지 제품들 역시 2011. 11. 14.부터 2020. 10. 20.까지 지속적으로 판매하였던 점, ③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DW 3030' 제품에 관한 혐의만이 인정되었던 점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DW 3030' 제품을 수령한 2019. 10. 31.이나 2020. 4. 22., 또는 원고가 피고 B를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2020. 10. 20.에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의 단기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2) 장기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민법 제766조 제2항),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개의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

고, 각 채권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2064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2011. 11. 14.부터 2020. 4. 20.까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피고 제품들을 계속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이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고 회사가 위 기간에 피고 제품들을 판매한 날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2024. 1. 11. 제기되었으므로, 2011. 11. 14.부터 2014. 1. 10.까지의 생산·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2014. 1. 11.부터 2020. 4. 20.까지의 생산·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3) 검토결과의 정리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1)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 여부

원고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 회사의 매출액은 약 960억 원에 달하고, 피고 제품들 관련 매출 비중을 보수적으로 1.5%로 산정하더라도 약 13.9억 원에 이르므로, 2024년 기준 제조업 평균매출액 영업이익률인 약 5.1%를 적용하면 침해로 인한 이익액은 약 7,000만 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한다.⁹⁾

그러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위 매출액 중 피고 제품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9) 원고의 2026. 5. 28. 자 준비서면 6면 참조.

이 1.5%라는 점에 대한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2024년 기준 제조업 평균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적용한 금액이 피고 제품들의 한계이익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3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2)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 여부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6항은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출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 제품들의 구체적인 판매 수량과 가액을 파악하기 어려워 이 사건은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하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3,000,000원으로 정한다.

① 피고 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2014. 1. 11.부터 2020. 4. 20.까지 약 6년 3개월 동안 피고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회사가 위 기간에 판매한 피고 제품들의 개수 및 단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나, 앞서 본 피고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1년에 약 200개 정도의 피고 제품들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간에 판매된 피고 제품들의 개수는 대략 1,250개[= 200개 × (6년 + 3/12)] 정도로 볼 수 있다.

③ 피고 회사가 'DW 3030' 제품을 개당 4,000원에 판매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

제품들의 판매로 인한 매출액은 5,000,000원(= 1,250개 × 4,000원) 정도로 추산된다.

④ 다만 피고 회사는 피고 제품들을 판매하기 위해 원재료비, 인건비, 관리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므로 위 매출액 전부를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구 디자인보호법(2025. 1. 21. 법률 제10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7항(이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라 한다)의 적용 여부

원고는 이 사건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디자인보호법이 2020. 10. 20. 법률 제1752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위 개정 디자인법 시행일인 2020. 10. 20.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되고(부칙 제2조), 피고 회사의 디자인권 침해행위는 그 시행일 전인 2020. 4. 20.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000원 및 그중 제1심판결이 인용한 부분인 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 1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나머지 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 1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0.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및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령

판사 이지영

판사 성재혁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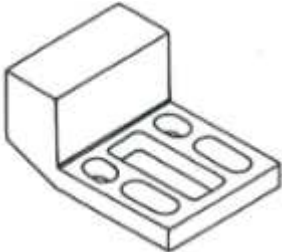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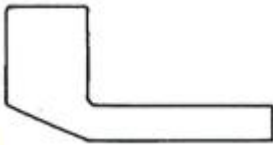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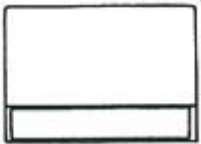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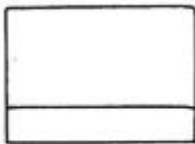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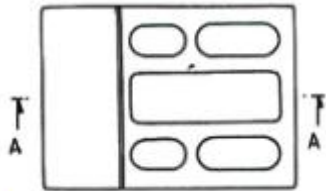
【디자인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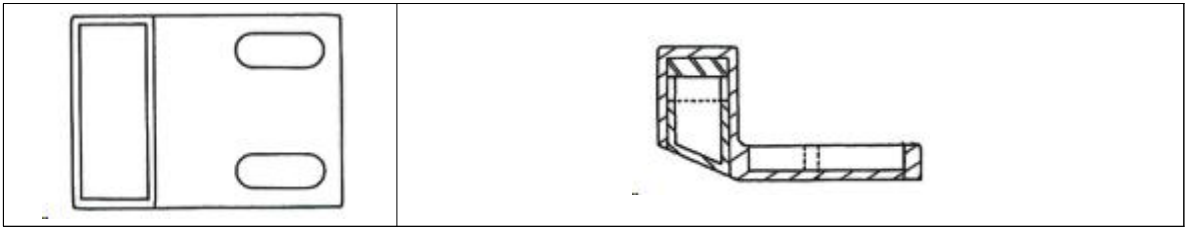
1. 재질은 합성수지, 금속 및 영구자석임.
2. LCD 제조장치, 반도체 제조장치 등의 각종 산업 기계장비의 문짝이 설치되는 부분에 장착됨.
3. 내부에 삽입된 영구자석의 자력으로 문짝을 고정하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문짝 고정용 마그넷 홀더의 신규한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정면도와 대칭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1(A-A선 단면도)	



[별지 2]

피고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문짝용 잠금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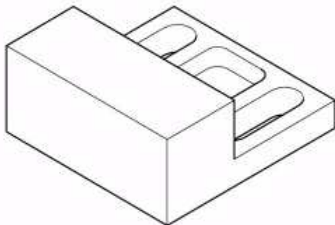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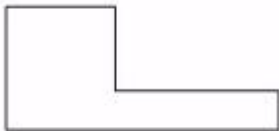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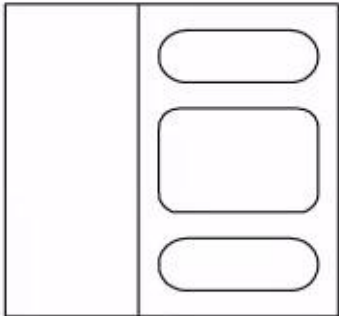
【디자인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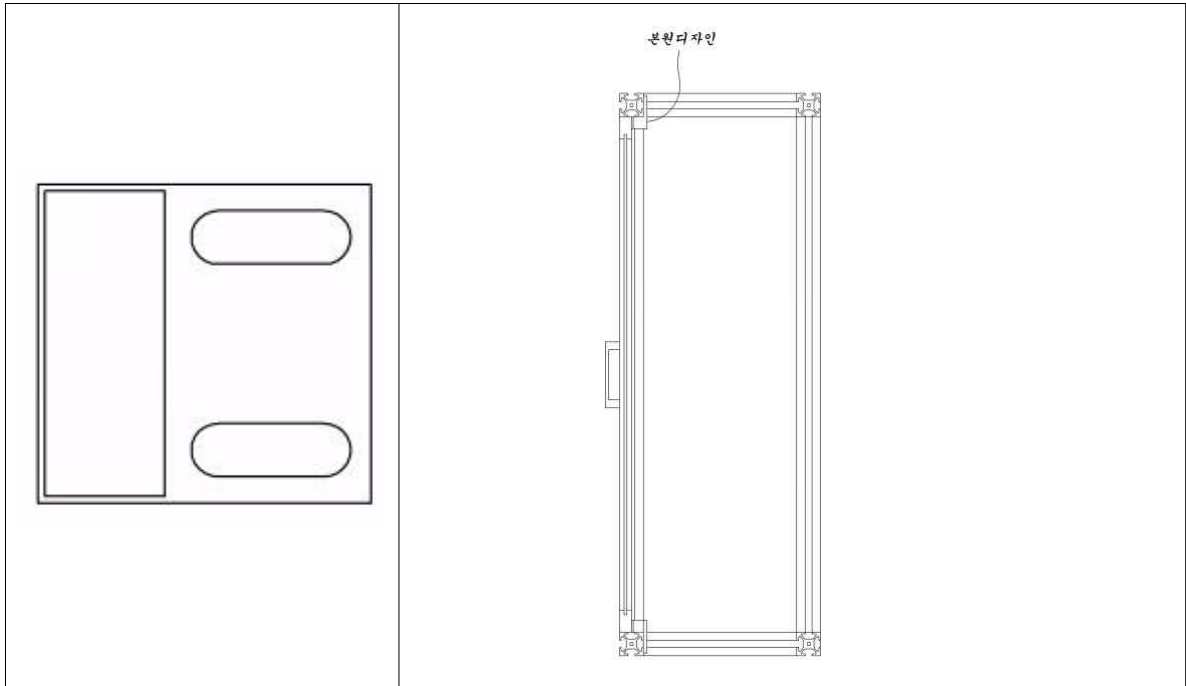
1. 재질은 합성수지 및 자석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문짝용 잠금쇠"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정면도와 대칭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1(A-A선 단면도)	



[별지 3]

피고 유사디자인 1, 2

1. 피고 유사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문짝용 잠금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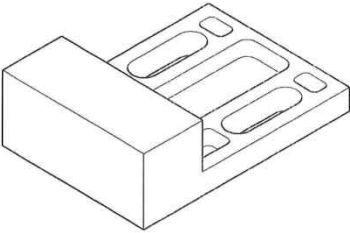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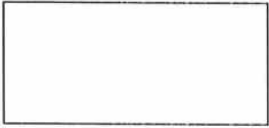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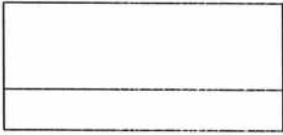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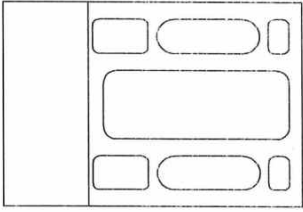
【디자인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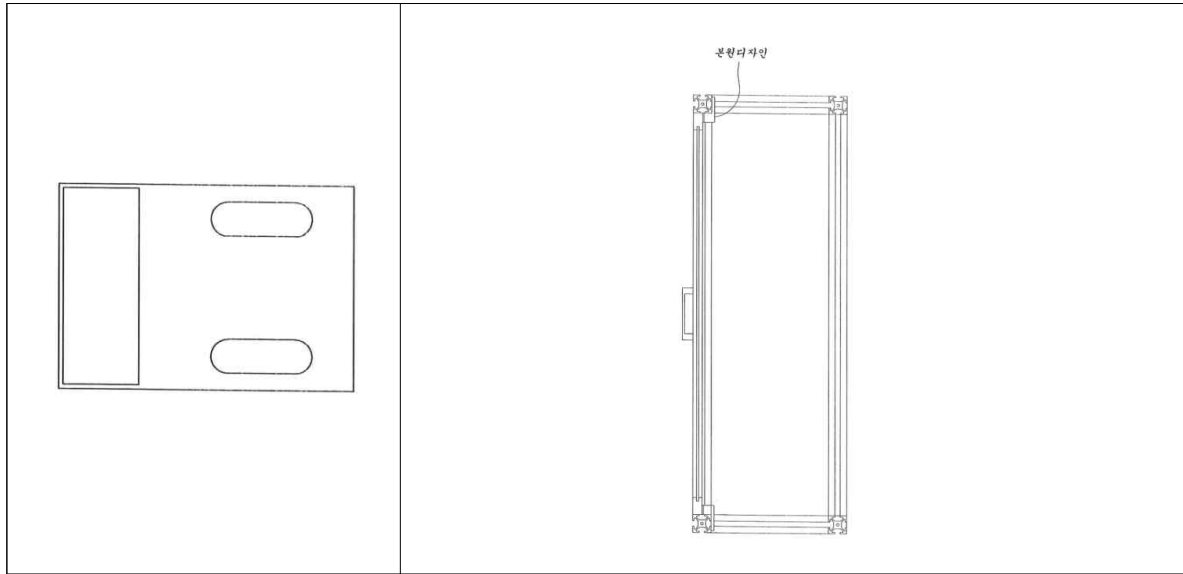
1. 재질은 합성수지 및 자석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문짝용 잠금쇠"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정면도와 대칭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1(A-A선 단면도)	



2. 피고 유사디자인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문짝용 잠금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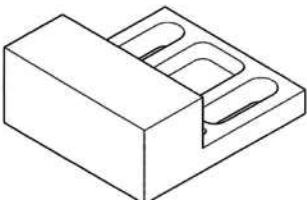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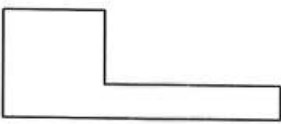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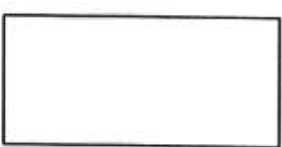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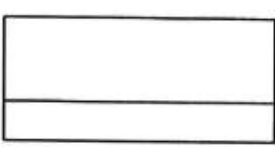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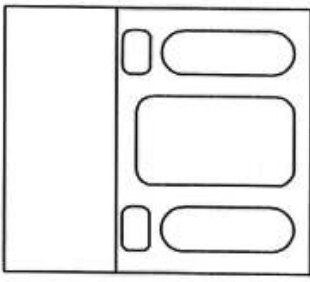
【디자인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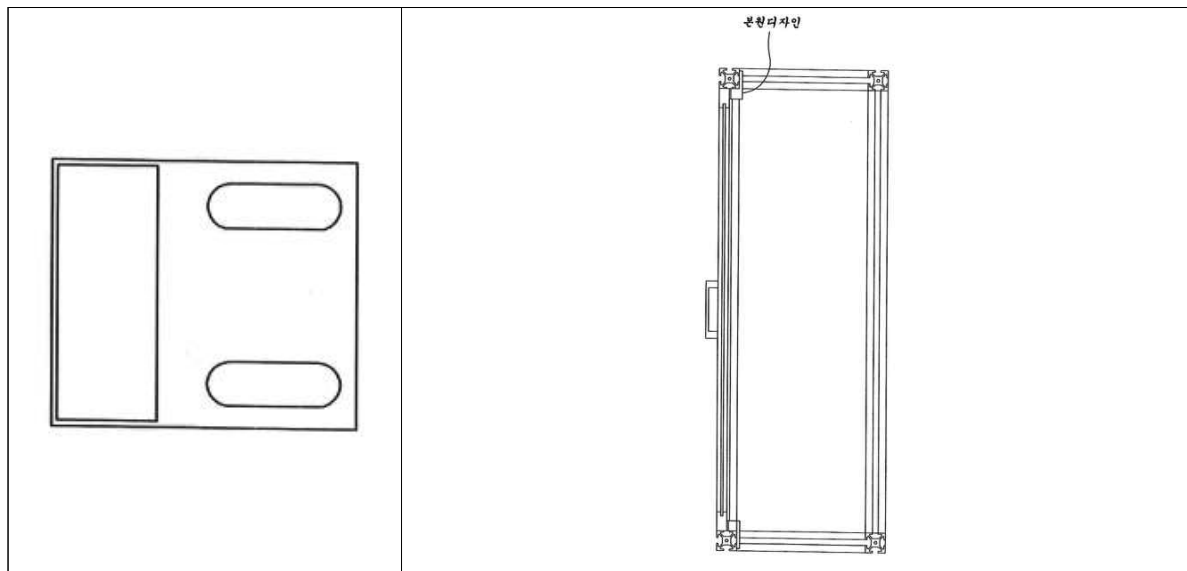
1. 재질은 합성수지 및 자석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문짝용 잠금쇠"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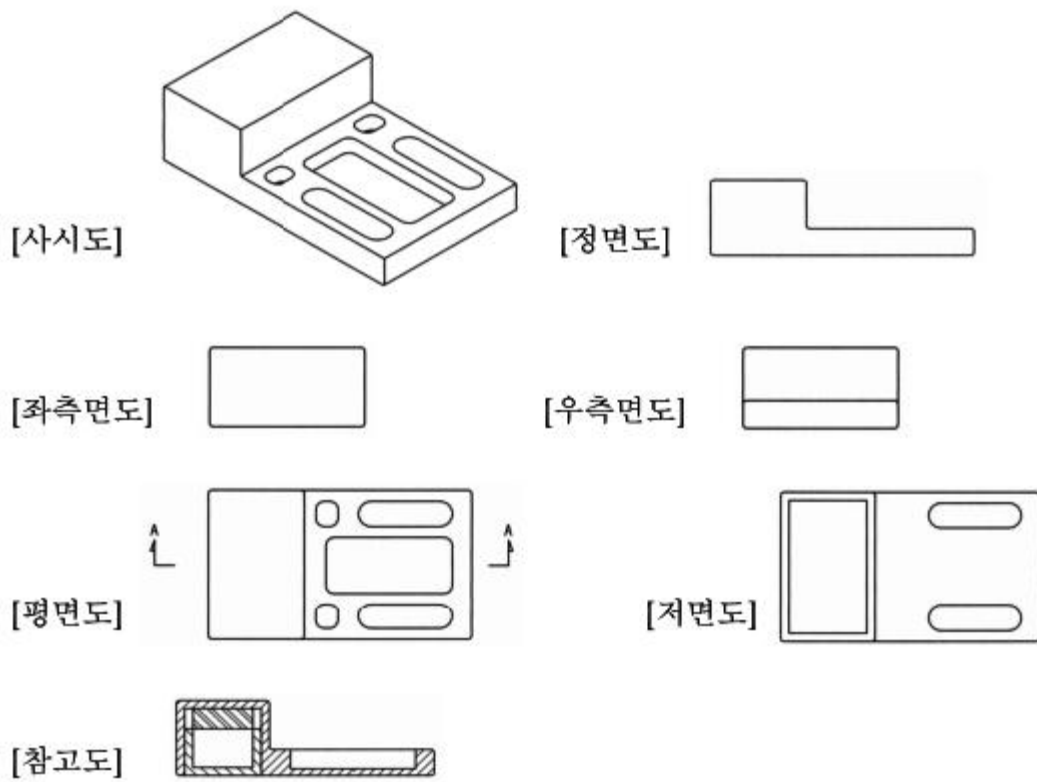
【도면】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정면도와대칭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1(A-A선 단면도)	



[별지 4]

HFA 디자인



끝.